

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행정규제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불합리한 규제지적 사항 및 다가구주택 수도요금 가구분할조정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권고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, 동일건물내의 업종적용에 있어 일률적으로 높은 요율의 업종 요금을 적용하던 사항을 개정하여 시민의 고충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징수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동 조례 목적에 삽입(안 제1조).
-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 선납 조항을 납부조항으로 조정함(안 제6조).
-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기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공사를 취소하던 것을 중지된 것으로 보고, 중지일은 기간 경과일부터 6월 이내로 하고 경과시 취소함(안 제13조 제2항).
- 급수공사비와 시설부담금을 동시에 납부하던 것을 납부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함(안 제14조 제1항).

□ 검토내용

< 법적 타당성 >

-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관리실태의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지시와 다가구주택 수도요금 가구분할 조정과 관련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 권고사항에 대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

- 동일건물내의 업종 적용에 있어 일률적으로 높은 요율의 요금을 적용하던 사항을 지방자치법과 수도법에 근거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.

< 내용의 타당성 >

- 개정 조례안 제1조에서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을 추가로 삽입하여 사용료의 징수 및 과태료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
- 안 제6조에서는 급수공사의 신청시 설계 수수료의 선납을 납부로 개정하여 수수료 선납의 부담 분담이 가능토록 개선
- 안 제13조에서는 공사비의 선납 기간을 6개월 경과시 취소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미납 사유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
- 안 제14조의 시설부담금도 공사비와 동시 납부토록 한 조항을 납부 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
- 안 제16조에서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부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의 규제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였고
- 제19조 제3항에서는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시정 조치한 내용임.
- 수도요금의 징수와 관련된 일부조항(제26조, 제29조, 제31조, 제38조 등)을 수용가 입장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
- 개정 조례안의 내용 및 구조 등 전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 행정 규제완화 측면에서 개정코자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